



제7차 NPT 평가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

권희석

외교통상부 군축비화산과장

서론

핵비화산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이행 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는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지난 5월 2일~27일 4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NPT는 1970년 발효된 핵무기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유일한 국제 규범이다.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1945년 8월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이후 인류는 핵무기 확산이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핵무기 확산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을 성안하자는 구상은 1950년대 말 처음 대두되어 폴란드·아일랜

드·스웨덴 안을 기초로 유엔 총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프랑스가 1960년, 중국이 1964년 각각 핵실험에 성공, 핵보유국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자 핵무기 비화산 조약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거의 10년간에 걸친 조약 문안에 대한 교섭 끝에 1968년 미·소 양국이 제네바 군축회의에 NPT 공동 초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같은 해 6월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금일 현재 NPT 당사국은 북한을 포함할 경우 189개국이며, 주요 비당사국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3개국이다. 우리나라에는 1975년 4월에 NPT에 가입했다.

NPT는 국제 핵비화산 체제의 초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조약의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해 비핵보유 당사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약 3조).

특히 196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만을 핵보유국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비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조약 9조) 양측의 의무를 상이하게 부여함으로써 차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현재 군축·비화산 분야의 화두로 거론하는 사안들은 모두 NPT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모든 군축·비화산 사안은 NPT로 통한다'.

NPT는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

본고의 내용은 외교통상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

성된 짧은 조약이지만, NPT가 다루는 범위는 군축·비핵화 분야 전체를 포괄하며 각 조항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NPT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조 : 핵보유국의 비핵화 의무
- 2조 : 비핵보유국의 비핵화 의무
- 3조 : 안전 조치 및 수출 통제
- 4조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5조 : 평화적 핵폭발
- 6조 : 핵군축 의무
- 7조 : 안전 보장 및 비핵 지대
- 8조 : 평가회의 개최
- 9조 : 보편성 확보
- 10조 : 탈퇴 및 조약 연장
- 11조 : 조약 기탁

예컨대, IAEA의 안전 조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3조에, 이란의 비핵화 의무 위반 논쟁은 2조에,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의 활동은 3조에, 농축·재처리 시설 허용 문제는 4조에,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는 7조에 각각 개념적 또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NPT 가입 문제도 9조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NPT는 1970년 발효 이후 지난 35년간 군축·비핵화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 틀을 제공해온 대단히 중요한 법적 문서로 기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계의

NPT에 대한 연구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NPT를 집중적으로 다룬 단행 서적으로는 「NPT, 어떤 조약인가?」(1995년 황영채 저)가 유일하고, 이 또한 10년전 출간된 것이어서 지난 10년간 빠르게 진화해온 군축·비핵화 분야의 주요한 진전 들에 대해 알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NPT 자체가 지닌 특성도 한몫 한다. NPT가 다른 모든 이슈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복잡하고 정교해져 제각기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NPT 자체보다는 각 이슈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NPT에 초점을 맞춘 평가회의도 5년에 한번 개최되어 여론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끌지 못한다.

평가회의 개최 전 3년간 매년 준비 회의를 개최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준비 회의이며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평가회의 자체에서 이루어진다.

더구나 NPT 평가회의는 특정한 군축·비핵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조약 실행에 있어 국제 사회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하는, 군축·비핵화 분야의 리더십을 제공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회의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금번 평가회의처럼 종종

당사국간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합의 문서도 도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하에서는 금번 평가회의의 경과와 토의 내용을 살펴보고, NPT의 장래를 진단해 본다.

NPT 평가회의 준비

NPT 당사국들은 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8조에 따라 1975년 제1차 평가회의를 가진 후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조약 10조는 발효 후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약의 폐기 또는 연장 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5년 제5차 평가회의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조약의 효용성에 공감하여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평가회의는 제7차에 해당한다.

1995년 제5차 평가회의시 “평가 과정 강화”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 개최 전 3년간 준비회의(PrepCom: Preparatory Committee)를 매년 한 차례씩 갖게 되어, 금번 평가회의를 행정적·실질적 측면에서 사전 대비하는 준비회의가 2002년(제1차), 2003년(제2차) 및 2004년(제3차) 각각 개최되었다.

평가회의는 관례적으로 4주 회의 기간 중 첫째 주에는 각국 수석 대표들의 기조 연설을 청취하며, 이후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조약상의 제반 이슈들을 3개 위원회에 배분하여 2주간 토의를 갖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그간 토의된 내용을 담은 결과 문서를 작성, 토의한 후 최종 채택하는 과정을 밟는다.

평가회의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입장과 같이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지역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교섭에 임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핵군축 문제를 둘러싸고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 입장이 대립하는 구도였으나, 2000년 평가회의부터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서방 그룹·비동맹 그룹·동구 그룹 중 하나에 소속된 채, 사안에 따라서는 EU·G-10·NATO-5·NAC¹⁾ 등과 같이 소규모 독자 그룹을 형성하여 개별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서방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평가회의의 토의는 기본적으로 NPT의 3대 pillar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NPT는 핵비확산,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가지 요소간 미묘한 균형을 기초로 존립하고 있다.

비핵보유 당사국이 핵무기 비확산 의무를 부담하는 댓가로, 핵보유

국은 핵군축을 성실히 추진한다는 공약과 아울러 비핵보유 당사국에 대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따라서 3대 pillar 중 어느 한 요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타 요소의 이행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원자력 기술의 양면성으로 인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라도 사용국의 의도에 따라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NPT 비확산 체제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내재한다.

즉, NPT 당사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실하에 농축·재처리 활동을 NPT 규정대로 IAEA 안전 조치하에 진행하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NPT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탈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북한·iran·리비아 등 비확산 의무 위반 사례와 파키스탄 Khan 박사의 핵 암시장 망 적발 등으로 NPT 비확산 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5년만에 개최되는 평가회의가 핵비확산 체제의 유지·강화에 있어 갖

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이 금번 회의 직전까지 의제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데서 이미 회의의 파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

금번 평가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작년 제3차 준비회의(4.26~5.7, 뉴욕)는 실질 문제와 절차 문제 전반에 걸쳐 평가회의에 제출할 권리와 문서에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회의였으나 의무 불이행 등 핵확산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핵군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이슈인 탈퇴와 NPT 제도화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와 같은 실질 문제뿐만 아니라 의제 채택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비추어 금번 회의는 핵보유국과 비동맹을 중심으로 한 비핵보유국간 책임 공방과 상호 비난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으며, 따라서 구체적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등 서방 그룹은 3대 pillar 중 비확산 pillar에 초점을 맞춰, iran 핵문제, 북한 핵문제 등 의무 불이행 사례와 핵 암시장 위협 대처 등 비확산 분야에서의 위협 논의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현행 비확산 체제의 하점을 보완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비동맹은 핵군축, 안전 보장,

1) NAC : New Agenda Coalition(신의제 연합) :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남아공,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등 7개국으로 구성 : 핵보유국들에 대해 분명한 핵군축 공약, 핵무기의 투명성 제고, 추가적인 핵군축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중.

증동 문제 등 전통적 이슈에 치중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등 자신의 의무 이행은 소홀히 한 채 비확산 pillar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핵군축 성과를 홍보하면서 핵군축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에 초점을 두려는 것은 핵확산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비동맹은 미국의 핵군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후 핵군축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그간의 핵군축 진전과 국제 사회의 기대치간 인식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간 핵보유국 및 원자력 선진국들이 NPT 3조의 안전 조치와 수출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여 NPT 4조의 평화적 핵이용권이 제약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1974년 인도의 핵폭발 장치 실험 이후 NPT의 bargain이 비핵보유국의 부담만 가중시켜 온 것으로 보고 금번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NPT의 핵심 이슈에 대한 양 진영의 혼격한 입장 차이에 비추어 금번 평가회의에서 결과 문서 챕터이 난망시되는 가운데 평가회의 의장(Sergio Duarte 브라질 군축대사)

이 회의 전까지 최소한의 제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평가회의 벽두부터 절차적 문제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도 예견되었다.

금번 평가회의에 우리나라에는 외교통상부 천영우 외교정책홍보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본부, 주국제연합 대표부, 주제네바 대표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 등 총 13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회의 전 기간에 걸쳐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토의에 적극 참여했다.

무총장과 Mohamed ElBaradei IAEA 사무총장도 기조 연설을 하였다.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금번 평가회의 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약과 실제 이행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4개 분야에서의 전진을 촉구했다.

① 최초로 NPT 탈퇴를 선언한 국가가 나타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NPT의 integrity를 강화할 것

② 추가의정서 보편화를 통한 효과적인 비확산 의무 이행을 확보할 것

③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에 대한 핵 확산 위협을 축소할 것

④ 핵확산을 방지하려면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것.

Annan 사무총장은 이의 첫 단계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핵연료 주기 시설을 추구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촉구했다.

ElBaradei IAEA 사무총장은 NPT 체제의 핵심 개념으로 '안보와 개발'을 거론하면서 금번 평가회의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주요 사안으로 다음 6가지를 제시했다.

① NPT 체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

평가회의 결과

1. 기조 연설

다른 대규모 국제 회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회의 개시 첫 날인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각국 수석 대표의 기조 연설이 시행되었다. 총 150개 참가국 중 93개국 대표가 발언했다.

각국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 NPT 제 조항중 자국이 중시하는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해를 밝히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각국의 입장은 하기 3항(각 위원회 토의 경과)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회의 첫 날 Kofi Annan 유엔 사

2) 금번 회의의 주요 문서들은 유엔 웹사이트(www.un.org/events/npt200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약하고 추가 핵보유국에 대한 불용
자세 견지

② IAEA 검증 권한 및 수출 통제
강화

③ 민감 핵연료 주기에 대한 효과
적 통제

④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재
확인

⑤ 불이행, 탈퇴 등 국제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안보리의 신속한 조치 등 효과적 방
안 강구

⑥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
배가, 이의 방안으로 중동 및 한반
도에서 비핵 지대 설치 추진 및 북
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의 유용성

ElBaradei 사무총장은 또한 현
재의 다자간 협의가 민주주의처럼
다소 느리고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
주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한 안보
환경 창출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우리 수석 대표는 북한의 국제 비
확산 규범 무시와 NPT 탈퇴가
NPT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NPT 복귀 및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이 북핵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나 그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모든 핵무
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는 전략
적 결단만이 6자 회담에 돌파구를
가져다 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NPT 2,

3조의 비확산,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을 전제로 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확산 우려가 있는 국가나 경제
적 타당성과 에너지 안보에 기초한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
에게는 민감 핵연료 기술 및 시설의
이전을 통제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
시했다.

우리 수석 대표는 핵보유국의 군
축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NPT의 내재적 결점 보완 필요성,
추가의정서 보편화를 통한 IAEA
검증 체제 강화, CTBT 조속한 비
준 및 모라토리움 유지, FMCT 협
상 조속 개시, NPT 미가입국의 조
속한 가입 촉구, NPT 탈퇴 요건 강
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 의제 협의 및 위원회 구성

회의 초반 기초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5.2~11) 향후 실질 토의에 대
비하여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합의된 의제를 분담하여 토의를 진
행할 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과제
였다.

그러나 핵보유국과 비동맹간 금
번 회의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기
싸움'으로 인해 의제 협의에 시일
이 늦어져 5월 11일에 가서야 겨우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제를 나누어
맡을 위원회는 5월 17일이 되어서
야 구성되었다.

회의 종료시까지 실질 토의를 진
행할 수 있는 잔여 기간은 worki-

ng day로 8일에 불과하여 충분한
토의에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각 그룹의 입장은 살펴보면, 우
선 비동맹은 1995년 평가회의 및
2000년 평가회의에서 미국 등 서
방 그룹의 합의하에 채택된 중동 결
의와 핵군축을 위한 13개 실질 조
치(practical steps)를 주요한 실
적으로 보고, 미국 등 서방 그룹이
금번 평가회의에서도 이러한 합의
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
인 이행을 다짐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특히 2000년
평가회의시 13개 조치 합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이는 민주
당 행정부의 결정이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 정세하에서
13개 조치 중 일부는 소멸된 것도
있고 미국 국내 사정상 이행이 어려
운 것도 있어서 13개 조치 이행 공
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나아가 과거의 평가회의와 달리
금번 평가회의는 불이행 등 확산 위
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반된 양 진영의 시각은
핵심 의제인 16항의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비동맹은 의제 16항의 제목을
2000년 평가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16.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Treaty..., taking into
account the decisions and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1995 NPT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and the 2000 NPT Review Conference”로 제안했는데, 이는 의제 제목에 1995년 및 2000년 평가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결정과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평가회의가 여기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핵군축 논의보다는 비확산 도전과 불이행 문제가 회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과거 평가회의의 핵군축 결정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새로운 의제 제목을 단순히 “16.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Treaty”로 제안하였다.

의제 16항에 대한 논란은 제3차 준비회의(2004.5월 뉴욕)에서 미 결인 채로 Duarte 의장의 손에 넘어갔으나 그간 의장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번 평가회의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핵심적 이해가 걸려있는 첨예한 대립은 대개 쌍방 입장에 모두 배려하는 중간적 또는 모호한 문안으로 타협을 이루게 된다. 양 그룹은 5월 11일에 가서야 극적으로 의제에 합의하게 되었다.

의제 16항을 핵보유국이 주장하는 대로 “16.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Treaty: *”로

단순히 정하되, 비동맹의 입장을 배려하여 별표(* asterisk)를 붙이고 각주(footnote)를 단 것이다.

즉, 각주를 연결고리로 삼아, 의장이 의제 16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해석을 발표한 것을 자기 그룹의 입장을 보강하는 데 활용코자 한 것이다. “It is understood that the review will be conducted in the light of the decisions and the resolution of previous Conferences, and allow for discussion of any issue raised by States Parties.”

이 문장은 “평가가 과거 회의의 결정들과 결의를 고려하여 행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비동맹의 입장을 반영하였으며,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토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핵보유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로써 핵보유국은 의제 자체에는 과거 평가회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준

입장을 관철했다.

비동맹은 “in the light of”를 “taking into consideration”으로 수정하고, “the resolution” 다음에 “and the outcomes”(2000년 평가회의 결과 문서의 명칭)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상기 합의된 의제는 NPT/CONF

.2005/30으로, 의장의 상기한 성명은 NPT/CONF.2005/31로 발간되었다.

5월 11일 공식 회의에서 의제를 정식 채택할 때 비동맹 그룹 의장국(말레이시아)은 의제 채택을 환영하고 동 의제가 1995년 및 2000년 평가회의의 결정들과 결의에 따라 조약 이행을 점검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반면(NPT/CONF.2005/32), 서방 그룹 의장국(영국)은 간단히 의제 채택을 환영한다고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회의 최종 문서 문안을 교섭하는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의제가 합의된 후에도 비동맹과 서방 그룹간에 ① 다수의 의제를 어떤 식으로 위원회에 배분할 것인지, ② 위원회 토의를 도울 산하의 보조 기구(subsidiary body)를 몇 개나 설치할 것인지, ③ 보조기구의 임무, 즉 토의 의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문제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었다.

5월 18일 의장은 각 지역 그룹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 타협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위원회에 핵비확산, 핵군축, 안전 보장, 군축·비확산 교육, 2위원회에 핵비확산, 안전 조치, 비핵지대, NPT 제도화 문제, 3위원회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조약의 여타 조항이 배정되었다(NPT/CONF.2005/



DEC.1).

또한, 위원회별로 1개의 보조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되었다 (NPT/CONF. 2005/DEC.2).

1위원회 보조 기구는 “핵군축 및 안전 보장”(nuclear disarmament and security assurances), 2위원회 보조 기구는 “중동 문제 및 1995년 중동 결의 이행을 포함한 지역 문제”(Regional issu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Middle East and implementation of the 1995 Middle East resolution), 3위원회 보조 기구는 “10조(탈퇴)를 포함한 조약의 여타 조항”(Other provisions of the Treaty, including article X)을 다루기로 되었다.

의장은 보조 기구에 할애할 토의 시간 배정에 대해서도 “지난 평가 회의시 보조 기구에 대한 시간 배정 비율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가 균형된 방법으로 보조 기구에 대한 시간 배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상기한 합의 결과 위원회 별로 5월 19일부터 실질적 토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3. 각 위원회 토의 경과

가. Main Committee I (핵비확산, 핵군축, 안전 보장)

1위 원회는 5월 19일~25일간 Sudjadnan 의장(인도네시아 군축 대사)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핵비확산) 및 1위원회 산하 「핵군축 및 안전 보장 보조 기구」의장(Tim Caughley 뉴질랜드 대사)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핵군축, 안전 보장)을 기초로 6차례 공식 회의를 가졌으나, 핵보유국과 비동맹간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문서 없이 종결되고 말았다. 그 결과 5월 26일 전체 회의에 제출될 1위원회 보고서(NPT/CONF. 2005/MC.I/1)는 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서술한 후 결과 문서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간단히 결론내리고, 의장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첨부로 했다.³⁾

주요 이슈별 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NPT 비확산 의무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3대 pillar 의무 이행간 상호 연계나 포괄적인 이행 평가에는 반대한 반면, 비동맹은 3대 pillar의 균형된 이행이 중요함에도 핵보유국이 3대 pillar 중 비확산에만 치중하

여 이행상 균형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핵군축과 관련하여, 미국은 2002년 모스크바 조약 체결 등 핵군축 의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 중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란·북한 등의 불이행에 대한 대처가 보다 긴요하며, CTBT 조기 발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동맹은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강조하면서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위한 최근 조치를 인정하지만 전전이 매우 느린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또한, 비동맹을 포함한 비핵보유국들은 2000년 NPT 평가회의시 합의된 핵군축을 위한 “13개 실질 조치”(practical steps)를 상기하면서 핵보유국들의 추가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했다.

핵군축 문제에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New Agenda Coalition」 7개국(뉴질랜드·브라질·멕시코·스웨덴·아일랜드·남아공·이집트)은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진전에 만족하지 못하며 이행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하고, 현존 핵탄두 수가 30,000여개로 1970년 냉전 당시와 동일한 수치이며, 현재 보관중인 핵분열 물질로 핵탄두를 수천개 추가 생산할 수 있고, 핵보유국이 신형 핵무기를 연

3) 보고서 결론: The Committee was not able to reach a consensus on the text of the Chairman's working paper of Main Committee I and the Chairman's working paper of the Subsidiary Body I, as they do not reflect fully the views of all States parties. Nevertheless, the Committee agreed to annex the papers to this report.

구·개발중인 사실들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서방 그룹은 핵군축의 구체 사례로서 구소련 핵위협 감소를 위한 미 정부 추진 사업인 「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과 「G-8 Global Partnership」을 보고서에 언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러시아 및 비동맹은 이들은 NPT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서방 그룹은 조건없는 핵분열 물질 감축 협상(FMCT)의 조속한 개시와 제네바 군축회의(CD)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문안 포함을 주장한 데 대해, 비동맹은 검증 장치를 갖춘 FMCT 협상 및 CTBT 조기 발효 촉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핵보유국은 냉전 종식으로 안전 보장 제공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전 보장을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화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비동맹은 NPT 당사국인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한 댓가로 무조건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핵 무기 사용의 문턱(threshold)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안전 보장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Main Committee II(안전 조치, 수출 통제, 비핵 지대, 지역 문제)

2위원회는 5월 19일~24일간 6차례 공식 회의를 갖고 의장(Laszlo Molnar 헝가리 군축대사)이 미리 작성한 간략한 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방 그룹과 비동맹간 견해차로 인해 합의 문서 채택에 실패했다.

2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지역 문제 보조 기구」도 중동 문제에 대한 언급 정도와 이란 핵문제 언급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과 문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월 26일 전체 회의에 제출될 2위원회 보고서(NPT/CONF.2005/MC.II/1)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사실만 간략히 기술되었다.

토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그룹은

① IAEA 안전 조치 협정 및 추가의 정서의 새로운 검증 표준 및 원자력 공급 조건화, ② 수출 통제 강화, ③ 쟁거위원회 및 NSG 역할 평가, ④ 안보리 결의 1540호 전면 이행

⑤ CTR 및 G-8 Global Partnership 지지, ⑥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의 중요성, ⑦ 비핵 지대 설치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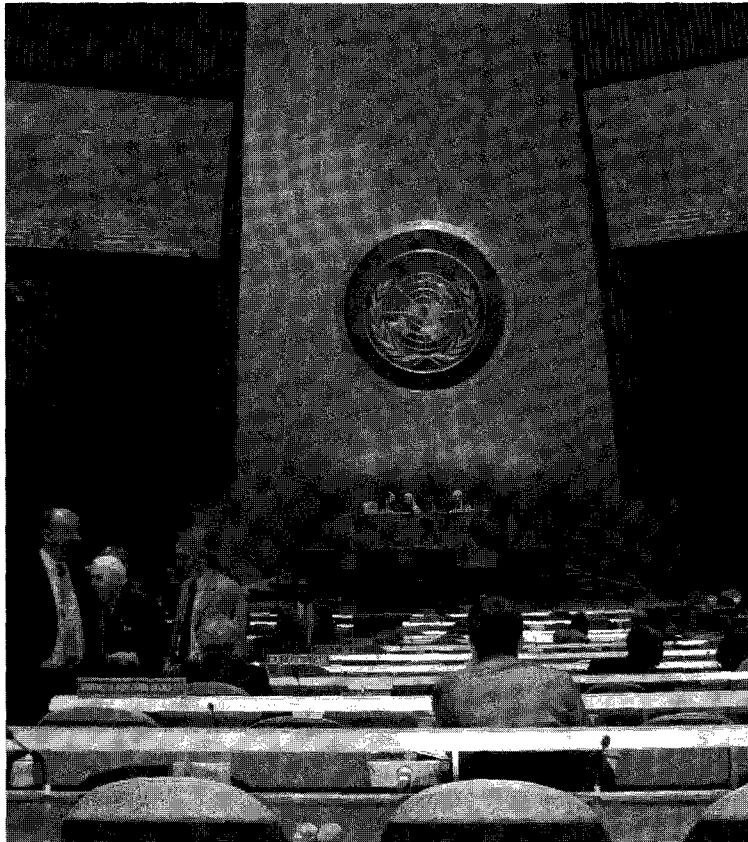
반면, 비동맹은 ①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었던 1995년 및 2000년 NPT 평가회의 결과 인정, ② IAEA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기구이며 불이행 문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③ 제한적인 원자력 능력을 가진 개도국에게는 추가의정서 이행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하며, ④ 수출 통제 체제는 투명성이 결여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서방 그룹이 주장하는 비핵산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비핵국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핵보유국은 핵보유국 내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문안에 대해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대응하였으며, 캐나다가 제안한 NPT 제도화 방안 중 상설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NPT의 유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 NPT 체제의 제도적 결함을 극복하고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노정되었다.

한편, 「지역 문제 보조 기구」도 의장(Garcia-Sauco 스페인 대사)의 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5월 20일 및 5월 24일에 토의를 가졌다. 미국은 보고서 초안이 중동 지역에만 편중되게 작성되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이란은 자국이 문제로 언급된 어떠한 문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핵비확산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이행 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는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지난 5월 2일~27일 4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중동 국가들은 1995년 평가회의에서 채택된 중동 결의와 2000년 평가회의 결과 문서에 명시된 중동 지역 비핵 지대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NPT 미가입국인 이스라엘의 조속한 가입과 이스라엘내 모든 원자력 프로그램을 IAEA 안전 조치하에 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방 그룹은 비동맹이 보조 기구의 토의 기조를 중동 지역에 국한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중동 문제와 함께 북한·이란 등 여타 지역 문제

에 대해서도 입장을 개진한 바, 중동 국가들은 보조 기구의 토의를 중동 문제에만 집중키로 양해가 된 상황에서 여타 지역 문제를 언급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서방 그룹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NPT 복귀 및 IAEA 안전 조치 협정 이행,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 검증 하에서 불가역적으로 전면 폐기, 6자 회담에 조속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반면, 비동맹 일부 국가는 안전 보

장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져야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금번 평가회의의 새로운 주제인 탈퇴 문제는 북한의 NPT 탈퇴 여부에 관한 법적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고는 논의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이란의 IAEA 안전 조치의 무불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간 여러 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다. Main Committee III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NPT 탈퇴)

3위원회는 5월 19일~25일간 6차례 공식 회의를 갖고 여타 위원회에서의 경우처럼 의장(Bonnier 스웨덴 대사)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서방 그룹과 비동맹간 입장차로 인해 합의 문서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위원회 보고서 (NPT/CONF.2005/MC.III/1)는 각국의 이견으로 결과 문서 합의에 실패했다는 간략한 내용으로 작성, 5월 26일 전체 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3위원회에서는 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민감 핵연료 주기 통제, NPT 탈퇴 요건 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간의 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를 포함한 서방 그룹은 NPT 4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는 NPT 1, 2조(비핵산 의무)와 3조(안전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동맹은 4조의 권리인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라고 강조하면서 1, 2, 3조 의무 이행과 연계를 배제했다.

민감 핵연료 주기 통제 필요성과 관련, 비동맹은 ① 현재 세계적으로 민감 핵연료 주기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② 과거 평가 회의에서 NPT 자체의 불이행 문제를 다룬 전례가 없으며, ③ 현 단계에서는 IAEA 핵연료 주기 전문가 그룹 보고서(2005년 2월 IAEA 사무총장에게 제출)만을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핵연료 공급 보장과 같은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우리를 포함한 서방 그룹은 ① IAEA 사무총장이 평가회의 첫 날 행한 연설에도 민감 핵연료 주기 활동이 확산일로에 있음을 인정했고, ② IAEA 뿐만 아니라 NPT도 자체의 불이행 문제를 다룰 권능이 있으며, ③ 민감 핵연료 주기 통제를 위해 핵연료의 공급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유효한 수단임을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 대표는 전력 생산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NPT 4조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불가양의 권리로 보나,

민감 기술·시설이 핵확산 우려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필요성을 인식한다 하고, NPT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의 합법적인 원자력 이용 권리는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민감 핵연료 주기 기술·시설을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에게는 평화적 핵 이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민감 핵연료 주기 시설의 보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에게는 핵연료 공급 보장 및 여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10조를 포함한 조약의 여타 조항에 관한 보조 기구」는 EU와 호주, 뉴질랜드가 각각 제출한 탈퇴 문제에 관한 working paper를 기초로 NPT 10조(탈퇴)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방 그룹 일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NPT 탈퇴 조항(10조) 해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기했다.

다양한 방안으로는 탈퇴전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부담, 탈퇴 후에도 안전 조치 계속 적용, 이전된 품목의 공급국에 반환, 탈퇴시 안보리 자동 개입, NPT 특별 회의 소집 등이 거론되었다.

비동맹은 핵군축, 안전 보장 등 NPT의 완전한 이행 문제는 도외시

하고 탈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탈퇴 조항 강화 조치가 NPT상 규정된 탈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서방 그룹 내부에서도 탈퇴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특정 당사국의 NPT 탈퇴 선언시 NPT 특별 회의 소집 등 탈퇴의 정치적 장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안보리의 자율적 권능을 침해하고, 이러한 탈퇴 절차 마련이 오히려 탈퇴를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보리 뿐 아니라 IAEA, NSG, PSI 등 여타 포럼에서도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본은 탈퇴 문제 검토를 위한 특별 회의 소집은 행정 지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주요 이해 당사국들에 의한 해결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 이 있고, 안보리의 개입은 역내 협의와 같은 일차적 조치가 취해진 후 마지막 해결 수단으로 유보되어야 하며, 특히 탈퇴 문제를 안보리에 자동 이관하는 것은 안보리의 권능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안보리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NPT에 규정된



탈퇴를 단죄의 시각에서 NPT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NPT는 안보리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명령할 수 없으며 탈퇴 선언시 안보리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유일한 현실적 대응 방안은 탈퇴 후에도 계속 IAEA 안전 조치 적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라. 보고서 문안 기초위원회 (Drafting Committee)

5월 25일 오후에 개최된 보고서 문안 기초위원회는 각 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보고 내용은 없었지만 행정·기술 사항 위주로 회의 최종 문서(Final Document)를 작성코자 하였으나, 평가회의 첫 째주부터 계속되어온 의제 문제에 관한 비동맹과 서방 그룹간 대립이 다시 재연되어 난항을 겪은 끝에 5월 26일 양측 입장을 타협한 문안에 합의했다.

즉, 5월 12일 의제 채택 직후 그룹별 발언시 비동맹은 의제 해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반면 서방 그룹은 일반적 입장 표명만 하였던 바, 서방 그룹으로서는 비동맹의 구체적 입장을 그대로 최종 문서에 담을 경우 의제에 대한 비동맹의 해석이 지배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각 위원회에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합의를 이

루기 위한 비공식 회의 개최 필요성도 제기 되었으나, 그룹간 의견 차가 심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4. 평가회의 최종일 회의

평가회의 종료를 하루 앞둔 5월 26일 Duarte 의장이 각 위원회에서 실질 문제에 대한 결과 문서 채택에 실패한 사정을 감안, 5월 27일 평가회의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담은 간략한 내용의 성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성명(President's Statement)에는 실질 사안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쟁점 사항들은 포함하지 않고 최소한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5월 27일 개최된 최종일 회의시 Duarte 의장은 마음을 바꿔 의장 성명 발표는 그만두고, “금번 회의 기간을 통해 NPT가 국제 사회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동안의 협조에 감사한다.”는 간략한 발언으로 대신했다.

또한 최종일 회의에서는 실질 사안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 따라 회의 일정, 구성, 의제, 참가국, 문서 등 행정적·기술적 사항만을 담은 최종 문서(NPT/ CONF.2005/DC /1)를 채택했다.

최종 문서 채택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 대표는 금번 평가회의가 실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NPT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가진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로 본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5. 특기 사항

가. 북한 핵문제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최초의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NPT 체제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이 개진되고, 이러한 견해들이 최종 문서에 어떤 식으로 기술될지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는 절차적 측면(북한의 NPT상 지위 문제에 따른 북한 명폐 존치 여부)과 실질적 측면(회의 최종 문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 문제)으로 나누어 다루어졌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6자 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대체로 2003년 및 2004년 개최된 NPT

준비회의의 전례에 따라 의장이 북한의 명패를 직접 보관함으로써 북한의 NPT 탈퇴의 법적 유효성 문제에 대한 비생산적인 토론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즉, 평가회의가 6자 회담 진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Molnar formula”(북한의 NPT 탈퇴 선언 직후 개최된 2003년 NPT 준비회의에서 의장인 Molnar 헝가리 군축대사가 북한 명패를 자신의 관리 하에 보관한 전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6자 회담이 진전되어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면 북한의 NPT 지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NPT는 북한 핵문제의 구체적 해결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6자 주도하는 6자 회담에 1차적으로 맡겨 두고 있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3국이 최종 문서 채택에 대비,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 문안 초안을 작성, 중·러의 동의를 얻어 최종 문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키로 했다.

문안 초안은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인 점, 북한의 6자 회담에의 조속한 복귀, NPT 복귀 및 안전 조치 협정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

로 마련되었다.

금번에는 한·미·일 3자간 우선 문안을 협의하면서 중·러와 교섭을 병행하던 중 최종 문서가 채택되지 않게 됨에 따라 문안 교섭이 중단되었고,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도 없게 된 셈이다.

서방 그룹은 기초 연설 및 위원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선언(2003년 1월) 및 핵보유 주장(2005년 2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의무 이행과 6자 회담에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였으며, 말레이시아(비동맹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비동맹 국가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미약한 강도로 발언했다.

나. NGO 활동

금번 평가회의에는 군축·평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세계 119개 NGO 단체가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인원수는 2,000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회의 첫 날 유엔본부 건물 앞에서 핵무기 철폐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핵군축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핵무

기의 위험에 대한 각국 정부 대표들과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평가회의는 5월 11일(수) 오후 공식 회의를 NGO 연설을 청취하는 데 할애하여 총 18개 NGO 대표들이 연설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평

화네트워크 정육식 대표가 「Move Toward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제하의 연설을 했다.

다. 핵보유국 공동 성명

(Common Statement)

금번 평가회의 계기에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핵보유국들이 핵비확산,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동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2000년 평가회의 전례에 따라 프랑스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금년 1월부터 수 차례 회합을 가졌으나, 평가회의 자체가 실질 문서 채택없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만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교섭을 중단했다.

평가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

금번 평가회의는 핵심 이슈인 핵비확산과 핵군축 문제를 둘러싼 미국 등 핵보유국과 비동맹간 입장 대립이 시종일관 계속되었고 결과 문서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도 결여된 탓에 결국 최종 문서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 의제, 위원회 및 보조 기구 구성 등 절차 문제를 합의하는 데 2주일 이상을 소모함으로써 실질 문제 토의에 필요한 시간도 불충분했다.

먼저 3개 Main Committee 및



산하의 보조 기구에서 합의 문서 채택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마지막 합의 도출 노력도 실패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결과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지금까지 6차례 개최된 평가회의 중 1차(1975), 3차(1985), 6차(2000) 회의시만 최종 문서를 채택하였고 나머지 3차례의 평가회의에서는 최종 문서 채택에 실패했던 전례를 보면 금번 회의의 합의 부재가 NPT 체제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당사국들이 기조 발언 및 위원회 발언을 통해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으로서 NPT의 지속적인 유용성과 NPT 체제를 보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나름대로의 회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도전에 해당하는 NPT 탈퇴 문제, 민감 핵연료 주기 다자 통제 방안, NPT의 제도적 보완 관련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도 성과의 일부라고 본다.

당사국들이 금번 회의 결과를 보

는 시각은 자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비핵보유국들이 금번 회의를 실패로 규정하고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데 반해, 핵보유국들은 금번 회의가 실패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유보적이며 다양한 토의를 가진 점을 성과로 부각시키려고 한다.

일례로,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이 혼재되어 있는 EU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여 “금번 평가회의가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⁴⁾

우리는 금번 회의 결과가 NPT의 유용성에 대한 손상으로 이어지거나, 여타 군축 포럼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익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회의시 개진된 각국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논의에 대비할 계획이다.

NPT에 대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NPT가 핵비확산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임을 재확인하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평가회의 종료 후 5월 27일 성명을 발표, 금번 회의가 실질 합의 없이 폐막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금년 9월 유엔 창설 60주년 정상회의에서 군축·비확산 분야의 공약을 새롭게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PT 평가회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NPT가 안고 있는 개별적인 비확산 어젠다는 개별적인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IAEA 이사회에서는 안전 조치 강화, 불이행 문제, 민감 핵연료 주기 통제 문제를,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에서는 핵 수출 통제를 계속 다루어 나갈 것이고, 7월 6일~8일간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G-8 정상 회의에서는 비확산 공약을 확인하는 정상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유엔 창설 60주년 정상 회의에 대한 기대도 자못 크다.

이러한 개별 협의체들에서 진지하고 성숙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노력할 때 전반적인 NPT 비확산 체제도 강화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4) Statement by the EU Presidency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at the 2005 NSG Plenary, Oslo, 20-24 June 2005, "Despite the considerable efforts made by a very large majority of the NPT Parties working towards a positive outcome of the 2005 NPT Review Conference, it was not possible to achieve consensus on a final document that would contain concrete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strengthen the NPT regime. One of the conclusions which the European Union draws from this outcome is the necessity to redouble its efforts on the strengthening of the other non-proliferation instruments and in particular of the NSG regime in order to adapt its Guidelines to the new non-proliferation challenges"